

2026년도 제2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록

I 개 요

- 일 시 : 2026. 1. 27.(화) 10:00~12:50
- 장 소 :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 릴리홀
- 참석현황 :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7명, 불참 3명
 - 참석위원(17명)
 - 이인재(위원장), 최병조(부위원장), 이준한, 안치영, 김장균, 김태성, 성영애, 김준동, 김우일, 김영균, 황문현, 김평원, 김응철, 강희찬, 이영수, 김규원, 황병희
 - 불참위원(3명)
 - 허진, 이승호, 이남식

II 회의 결과

- 제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가. HUSS 포용사회이니셔티브학부를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해당 학부의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가상학과(부)에 대해서는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부·복수전공 인정 여부를 총장의 승인

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함(개정안 제10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대학교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총장 방침: 2026. 1. 7.(수)

○ 의견 조화: 2026. 1. 7.(수) ~1. 13.(화)

○ 사전 심사 : 2026. 1. 14.(수)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6. 1. 27.(화)

○ 평의원회 심의: 2026. 3월 중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2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가.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영어 등 원어강의를 확대코자 함
- 나. 기존 원어강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어강의의 정의와 범위를 재정립하고, 원어강의로 지급 기준 및 대상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추진내용

- 부총장 주재 영어 원어강의 개선 회의 진행

	1회차	2회차	
회의 일자	2025.11.03.(월)	2025.11.11.(화)	
참석자	- (보직자) 교학부총장, 기획부총장, 교무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 교육혁신본부장, 기초교육원장 - (직원) 학사과장, 국제교류과장, 국제지원과장, 교육혁신과장, 기초교육과장, 실무자 5인		
회의내용	- 원어강의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 및 수강제한 해소 등 영어강의의 건전한 내실화 시행, 업적평가 및 인센티브 개선 등 관련 부서별 개선 사항 검토 - 원어강의(EN)의 범위를 엄격히 재정립하고 글로벌강의(ES)를 신설하여 원어강의의 범위를 확대		
		원어강의(EN)	글로벌강의(ES*)
	정의	구술의 80% 이상이 원어	- 구술: 한국어 - 원어 교재 및 자막 제공
	원어	영어 등 외국어	영어 등 외국어
	성적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어강의료	지급	미지급
	업적평가	가점 지급(3점)	가점 지급(2점)
	*ES: English Subtitles		

3. 주요 개정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원어 강의	정의	[신설] 원어강의: 구술의 80% 이상을 원어로 진행하는 수업	제3조제6항
	범위	[변경] 원어: 영어 등 외국어	
원어 강의료	지급기준	[신설] 전임교원 초과강의료(전임/비전임 동일) ※ 40,000원 x 교과목 시수 x 15주 x 0.5 (원어강의료는 추가강의료임)	제8조제2항
		[삭제] 외국인 미수강 시 0.25배 지급	제6조제4호
	지급대상	[삭제] 외국인 교수의 원어강의료 지급 제한	

※ 원어강의 모니터링 → 강의평가

(원어강의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문항으로 개선 예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

나. 예산조치

○ 원어 강의 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보고

다. 합의사항 : 교무과, 국제교류과, 교육혁신과, 기초교육과 협의 완료

라.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본부회의 및 교무회의 보고 : 2025. 12. 15.(월) ~ 12. 16.(화)
- 총장방침 수립 : 2025. 12. 23.(화)
- 의견조회 : 2025. 12. 24.(수) ~ 12. 31.(수)
 - 검토결과 : 의견 부분수용(검토의견 불임 참조)
- 사전심사 : 2026. 1. 7.(수)
-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 2026. 1. 21.(수)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1. 27.(화)
- 평의원회 심의 : 2026. 3월 중

5. 첨부자료

가. 인천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3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INU인권센터장]

1. 제안사유

- 가. 2020년 인권센터 규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사건의 경험치를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신고, 조사 등 처리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 나. 인권센터의 사건처리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인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권센터 설치근거 현행화 (안 제1조)
-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스톱킹, 2차 피해 (신설안 제2조 제5호 및 제7호)
- 다.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용어 명확화 (안 제2조 제8호~제14호)
- 라. 센터장의 제척 시 교학부총장 업무총괄 (신설안 제5조)
- 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분리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 현행 인권위원회의 센터 운영과 사건 심의를 분리
- 바. 신고 및 조사 처리절차 명확화 (신설안 제17조, 제2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고등교육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운영위원회 외부위원(2명) 회의 참석수당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2. 15.(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2. 16.(화)
- 총장 방침 : 2025. 12. 17.(수)
- 의견 수렴 : 2025. 12. 18.(목) ~ 2025. 12. 26.(금)
- 사전 심사 : 2026. 1. 2.(금)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4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지침 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INU인권센터장]

1. 제안사유

- 가. 인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의한 사건의 조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 나. 인권센터의 상담·조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건처리를 통하여 인권침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여 교내 구성원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조직 (안 제1조 ~ 제2조)
- 나. 인권침해 등 상담 (안 제3조 ~ 제4조)
- 다. 사건 접수 관련 (안 제5조 ~ 7조)
- 라. 조사방법 및 사건처리 (안 제8조 ~ 제11조)
- 마. 인권위원회 일정 통보 (안 제12조)
- 바. 외국인 사건당사자의 통역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2. 15.(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2. 16.(화)
- 총장 방침 : 2025. 12. 17.(수)
- 의견 수렴 : 2025. 12. 18.(목) ~ 2025. 12. 26.(금)
- 사전 심사 : 2026. 1. 2.(금)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5호 심의안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026년도 대학운영 시행계획안

○ 안전요지 [제출자: 기획처장]

1. 제안사유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대학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의거하여 2026년도 대학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추진일정

- 분야별 기초자료 작성 및 검토 : 2025. 10. 28. ~ 12. 17.
- 부서별 의견조희 : 2025. 12. 18. ~ 12. 24.

- 본부회의, 교무회의 보고 : 2026. 1. 5. ~ 1. 6.
- 재무경영위원회 및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1월 중
- 이사회 심의 : 2026. 2월 중
- 시행계획 수립 및 공표 : 2026. 2월 말

다. 별첨자료

- 2026년도 인천대학교 대학운영 시행계획(안) 1부.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6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직무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기획처장]

1. 제안사유

가.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직무대리 운영지침의 현행화

2. 주요내용

가. [별표] 부총장 직위명 및 업무관장 변경에 따른 직무대리 기준 정비

연번	직위	직무대리 순위표
1	교학부총장	• 교무처장 → 학생·취업처장 → (삭제) 기획예산처장 → 사무처장 → (추가) 교육혁신본부장 → (추가) 입학본부장
2	대외협력부총장 → (변경) 기획부총장	• (추가) 기획처장 → 연구처장 → (직위명 변경) 국제대외협력처장 → 캠퍼스기획안전본부장 → (삭제) 입학본부장

나. [별표] 부처장 직무대리 순위표 신설

- 직무대리 순위: 직제상 선임부서 과장 → 차순위 과장

다. [별표] 과·팀 일원화에 따른 ‘**과(팀)장**’ → ‘**과장**’ 으로 변경

라. [별표] 대학원혁신과 신설에 따른 대학원 직무대리 순위 조정

연번	직위	직무대리 순위표	
1	대학원 부원장	기존	• 행정실 선임자
		변경	• 과장 → 행정실 선임자

마. [별표] 직무대리 순위표 하단에 해당 직위 미설치 시 다음 순위가 직무대리를 수행한다는 원칙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2026. 1. 5.(월)
- 교무회의 보고: 2026. 1. 6.(화)
- 총장 방침 수립: 2026. 1. 7.(수)
- 의견조회: 2026. 1. 8.(목)~1. 14.(수)
- 사전심사: 2026. 1. 16.(금)
- 교육연구위원회: 2026. 1. 27.(화)

○ 심의결과: 원안가결

제7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사무처장]

1. 제안사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 및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의 권고 사항 이행으로 공정채용 지속 강화

나. 현행 업무 여건을 반영한 규정 정비를 통해 행정 절차 간소화

2. 주요내용

가. (안제7조제2항제2호) 채용공고문 필수 포함 사항 명시

- 전형별 평가 기준, 합격 배수, 동점자 처리 및 가점 기준

나. (안제7조제7항, 안제20조) 계약직원 채용 행정 절차 간소화

- 계약직원 제한경쟁채용계획 수립 시, 감독기관(교육부) 사전협의 절차 생략
- 계약직원 채용계획 수립 시, 직원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다. (안제9조) 전형위원 위촉 기준 변경

- 「인천대학교 직원 임용시행 지침」 준용
- 계약직원 채용에 대한 전형위원 위촉 예외 기준 삭제

라. (안제26조) 무기계약직 운전원 보수 근거 신설

마. (안제28조제2항) 오탈자 정정

- “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 의 을” → “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 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6. 1. 5.(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 1. 6.(화)
- 총장방침 : 2026. 1. 8.(목)
-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 2026. 1. 12.(월)
- 의견 수렴 : 2026. 1. 13.(화) ~ 1. 19.(월)
- 사전 심사 : 2026. 1. 20.(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1. 27.(화)

○ 심의결과: 원안가결

제8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교육혁신원 운영규정 폐지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육혁신본부장]

1. 제안사유

가. 교육혁신원이 교육혁신본부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육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교육혁신원 운영 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2. 15.(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2. 16.(화)

○ 총장 방침 : 2025. 12. 17.(수)

○ 의견 수렴 : 2025. 12. 17.(수) ~ 12. 24.(수)

○ 사전 심사 : 2025. 12. 26.(금) ~ 2026. 1. 2.(금)

○ 심의결과: 원안가결

제9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육혁신본부장]

1. 제안사유

가. 교육혁신원이 교육혁신본부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운영 규정을 폐지

하고,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여 교육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교육혁신본부 운영 상황에 맞게 조직 및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교육혁신원 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기존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수
 학습위원회, 교육혁신 및 성과관리·인증위원회를 통합하여 교육혁
 신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지침은 7조 및 부칙으로 제정하고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음

조	내용
안 제1조	제정목적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비밀유지 및 청렴의무
안 제7조	세부사항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2. 15.(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2. 16.(화)

○ 총장 방침 : 2025. 12. 17.(수)

○ 의견 수렴 : 2025. 12. 17.(수) ~ 12. 24.(수)

○ 사전 심사 : 2025. 12. 26.(금) ~ 2026. 1. 2.(금).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10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인증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육혁신본부장]

1. 제안사유

- 가. INU SURPRISE 인재 인증제 용어와 인증 대상을 인증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책 명칭을 학생역량 인증관리위원회 조항에 반영·정비하여 인증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나. 기존 ‘최우수, 우수’ 인증만으로 운영되어 온 INU SURPRISE 인재 인증제도는 2025년 2월 3일 본부회의에 보고되어 ‘최우수, 우수, 인재’ 인증으로 개편되었음. 이에 따라 개편사항을 적용 중이며,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여 인재 인증제도의 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INU SURPRISE 인재 인증제 용어와 기준 일치 (안 제2조 제2호)
- 나. INU SURPRISE 인재 인증 대상과 기준 일치 (안 제6조)
- 다. 학생역량 인증관리위원회 직책명 변경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합 의 : 없음
-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2. 15.(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2. 16.(화)
- 총장 방침 : 2025. 12. 17.(수)
- 의견 수렴 : 2025. 12. 17.(수) ~ 12. 24.(수)
- 사전 심사 : 2025. 12. 26.(금) ~ 2026. 1. 2.(금)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11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교육혁신본부장]

1. 제안사유

- 가. 조직 개편(교육혁신원 → 교육혁신본부) 따른 주관 부서 및 관련 용어 정
- 나. 온라인 교육환경 발전,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학생 수업 선택권 및 학사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이러닝 강좌 졸업학점 상한의 상향조정 및 연계전공 수강·개설 조건 완화
- 다. 전교생 필수 기초교양 중 이러닝 교과목의 오프라인 시험장·감독 확보 곤란을 고려, 성적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 라. 정부재정지원사업(HUSS 포용사회이니셔티브학부 등)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가상학부 형태의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성을 반영, 학기당 온라인 강좌 개설 수·시수 제한 등 기존 규제 적용 최소화로 사업 목적 달성과 교육성과 제고 지원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의 임명 기준 명확화(제3조제3항 개정)
- 나.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 및 주관부서 명칭 변경(교육혁신원 → 교육혁신본부)
 - 제4조제1항, 제6조제11항제1호 및 제3호, 제6조제1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개정
- 다.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학과(부) 또는 전공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 학기당 개설 강좌 수 제한, 개설 시수 제한, 분반 제한 등 기존 규제 적용 배제(제6조제15항 신설)
 - 온라인 성적평가 허용 예외 추가(제10조제2항제2호 신설)
 - 이러닝 강좌 학기당 수강학점 제한 및 졸업학점 취득 상한 적용 제외(제12조제3항제4호 신설)
- 라. 강좌 운영 및 학점 취득 관련 규정 조정
 - 수업지원조교(TA) 명칭을 수업운영 보조 장학생으로 변경(제9조제3항 개정)
 - 학사팀, 기초교육원 등 관련 부서 명칭 삭제(제10조제3항 삭제)

- 전교생 필수 교과목의 온라인 성적평가 허용 예외 신설(제10조제2항 제3호 신설)
 - 연계전공 과목의 학기당 개설 강좌 수 제한, 개설 시수 제한 완화 (제6조제7항제2호 신설)
 - 연계전공 이수 교과에 대한 이러닝 강좌 학기당 수강학점 제한 및 졸업학점 취득 상한 적용 제외(제12조제3항제3호 신설)
- 마. 이러닝 강좌 학점의 졸업학점 인정 상한의 상향조정
- 이러닝 강좌 졸업학점 인정 상한의 상향조정(제12조제2항 개정)
 - 학기당 이러닝 강좌 수강학점 제한(6학점, K-MOOC 포함 7학점)의 예외 규정 명확화(제12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합 의 : 없음
-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2. 15.(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2. 16.(화)
- 총장 방침 : 총장 방침 : 2025. 12. 17.(수)
- 의견 수렴 : 2025. 12. 17.(수) ~ 12. 24.(수)
- 사전 심사 : 2025. 12. 26.(금) ~ 2026. 1. 2.(금)

○ 심의결과: 수정가결

□ 제12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캠퍼스기획안전본부장]

1. 제안사유

- 가. 기획조정과-25(2025.09.01.)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개편 사항과 관련하여 대외협력부총장을 기획부총장으로 명칭을 변경
- 나.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관련사항 개정

2. 주요내용

- 가. 대외협력부총장을 기획부총장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 나. 캠퍼스기획안전과를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변경하는 사항 (제10조)
- 다.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담당자 변경 및 부서변경에 관한 사항(제12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전문)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12.1.(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12.2.(화)
 - 총장 방침 : 2025.12.9.(화)
 - 의견 수렴 : 2025.12.9(화) ~ 12.16(화)
 - 사전 심사 : 2025.12.17.(월)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13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캠퍼스기획안전본부장]

1. 제안사유

가. 인천대학교 내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증대에 따라, 연구실별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이행 항목을 개선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기획조정과-25(2025.09.01.)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개편 사항과 관련하여 대외협력부총장을 기획부총장으로 명칭을 변경

2. 주요내용

가. 고압 및 독성가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실의 법적 안전관리 준수 및 사고 예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제11조 신설).

나. 제11조를 제12조로 함.

다. 기획조정과-25(2025.09.01.)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개편 사항과 관련하여 대외협력부총장을 기획부총장으로 명칭을 변경[별표7]

3. 참고사항

가. 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전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12.1.(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12.2.(화)

○ 총장 방침 : 2025.12.9.(화)

○ 의견 수렴 : 2025.12.9(화) ~ 12.16(화)

○ 사전 심사 : 2025.12.17.(월)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14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공간관리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캠퍼스기획안전본부장]

1. 제안사유

- 가. 공간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인천대학교 공간관리시행지침」에 반영하여 공간관리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교육연구위원회 보류사항을 재검토한 후 안전 재상정

2. 주요내용

- 가. 공간사용료 납부방법 중 개인연구비 명칭을 정비하고, 납부 기준 명확화
- 나. 교수 개인에게 부과되는 초과공간사용료의 감면기준 신설
- 다. 신설 학과(부)의 공간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 라. [별표1] 오기 정정, [별표3, 4] 표 수정 및 문구 삭제
- 마. [별표3] 자연계열(수학과 제외)의 실험실습실 학생1인당 좌석 기준면적 상향조정(8.16→9.6㎡)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공간관리시행지침 개정 사전 협의 (연구기획관리과, 산학협력단)
 - 2025년 제6차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보류 (안전 재검토 후 재상정)
 - 3명 초과 대학원생 1인당 연구용실험실의 초과 면적 5㎡ 감면
 - 3,000만 원 초과 간접비 200만 원당 연구용실험실의 초과 면적 1㎡ 감면
 - 자연계열의 공학계열 지원(물리, 화학 등 교양수업 진행) 고려 ⇒ 실험실습실 학생1인당 좌석 기준면적 공학계열(9.6㎡)과 동일 적용
 - 신설 학과(부)의 공간사용료 6년간 면제
 - [별표 1] 오기 정정, [별표 3, 4] 표 수정 및 문구 삭제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1) 총장 방침 : 2025.12.18.(목)

2) 의견 수렴 : 2025.12.18.(목) ~ 12.24.(수)

3) 공간조정위원회 : 2025.12.30.(화) 【심의결과: 원안가결】

4) 사전 심사 : 2026.01.05.(월)

5) 재무경영위원회 : 2026.01.21.(수) 【심의결과: 원안가결】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15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평생교육원장]

1. 제안사유

가.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교육원 내 신설된 K-컬처 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나. 각종 기재사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고 운영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정비하여 평생교육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원의 사업 중 “K-컬처센터 운영” 추가(제3조)

나. 평생교육원의 교수 및 강사 자격의 의미 명확화(제5조 제2항)

- (기존) 전임교원 → (변경)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다. 인센티브 및 교육지도비 지급대상 확대(제5조 제3항)

- (기존) 학점은행제 담임강사 → (변경) 학점은행제 및 비학위 과정 담임강사

라. 보직명 변경사항 반영(제6조 제3항)

- (기존) 기획예산처장 → (변경) 기획처장

마. 운영위 결원 시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 제한 삭제(현행 제6조 제5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한의 필요성 및 실효성 부재

바. 운영위 심의사항 중 K-컬처센터 운영 관련사항 추가(개정 제6조 제5항)

사. 수료증 서식 내 기관 명칭 중 “부설” 삭제(별지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2. 15.(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2. 16.(화)
- 총장 방침 : 2025. 12. 23.(화)
- 의견 수렴 : 2025. 12. 23.(화) ~ 12. 29.(월) ※ 제출 의견 없음
- 사전 심사 : 2026. 1. 2.(금) ※ 수정내역 없음
-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 : 2026. 1. 5.(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 2026. 1. 21.(수)
 -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부 칙
수정 전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 후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1. 27.(화)
- 평의원회 심의 : 2026. 3월 중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16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K-컬처센터 운영규정 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평생교육원장]

1. 제안사유

가. 2025년 인천대학교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교육원 내 신설된 K-컬처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컬처센터 운영 목적·소재지·업무 규정(제1조~제3조)

나. K-컬처센터 조직 및 구성원 규정(제4조~제6조)

다. K-컬처센터 재정·재무회계·기타 규정(제7조~제9조)

※ K-컬처센터 주요 사항의 경우 상위기관인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으로 별도 운영위원회 미설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2. 15.(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2. 16.(화)

○ 총장 방침 : 2025. 12. 23.(화)

○ 의견 수렴 : 2025. 12. 23.(화) ~ 12. 29.(월)

○ 사전 심사 : 2026. 1. 2.(금)

※ 수정내역 없음

○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 : 2026. 1. 5.(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1. 27.(화)

○ 평의원회 심의 : 2026. 3월 중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17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자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평생교육원장]

1. 제안사유

가. 평생교육원 운영 과정 확대에 따라 교육과정의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강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변경 및 비학위 과정의 정의 (제2조 제3호)

나. 과정 명칭의 변경(제3조)

- (기존) 일반교육과정 → 비학위 과정

다. 위촉대상 강사의 제출서류 간소화 (제5조)

- 강사 위촉계약서 및 이력서 삭제(현행 제5조 제1호 및 제4호)

※ 계약서의 경우 과정별 기재사항이 상이하므로 규정화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체결 예정, 이력서는 강사지원서와 내용 중복되므로 삭제

라. 용어정의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현행 별첨 2)

- (기존) 일반교육과정 개설 신청서 → (변경) 비학위 과정 개설신청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5. 12. 15.(월)
- 교무회의 보고 : 2025. 12. 16.(화)
- 총장 방침 : 2025. 12. 23.(화)
- 의견 수렴 : 2025. 12. 23.(화) ~ 12. 29.(월)
- 사전 심사 : 2026. 1. 2.(금) ※ 수정내역 없음
-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 : 2026. 1. 5.(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1. 27.(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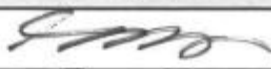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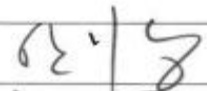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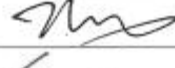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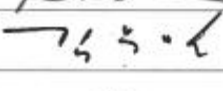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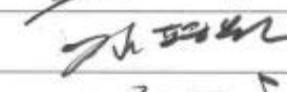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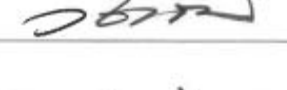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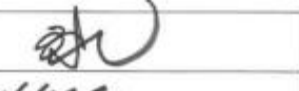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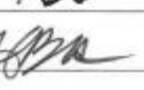



○ 심의결과: 원안가결

2026년도 제2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결과

구분	안건명	심의결과	
심 의	2-1	인천대학교 국대대학의 학생요류 및 학점안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2-2	인천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2-3	인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2-4	인천대학교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지침 제정지침안	원안가결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026년도 대학운영 시행계획안	원안가결
	2-6	인천대학교 직무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7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8	인천대학교 교육혁신원 운영규정 폐지안	원안가결
	2-9	인천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원안가결
	2-10	인천대학교 인증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11	인천대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수정가결
	2-12	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2-13	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14	인천대학교 공간관리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15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2-16	인천대학교 K-컬처센터 운영규정 제정규정안	원안가결
	2-17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자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026년 제2차 교육연구위원회 서명부

1. 일 시 : 2026. 1. 27.(화) 10:00
 2. 장 소 : 오라카이 송도 파크 호텔(딜리홀)

연번	구분	직위	성명	서명
1	위원장	총장	이인재	
2	부위원장	교학부총장	최병조	
3	위원	기획부총장	이준한	
4	위원	대학원장	허진	
5	위원	인문대학장	안치영	
6	위원	자연과학대학장	김장균	
7	위원	사회과학대학장	김태성	
8	위원	글로벌정경대학장	성영애	
9	위원	공과대학장	김준동	
10	위원	정보기술대학장	김우일	
11	위원	경영대학장	김영균	
12	위원	예술체육대학장	황문현	
13	위원	사범대학장	김평원	
14	위원	도시과학대학장	김용철	
15	위원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이승호	
16	위원	교무처장	강희찬	
17	위원	학생·취업처장	이영수	
18	위원	기획처장	김규원	
19	위원	연구처장	황병희	
20	위원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남식	